#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최수진·조정훈·임이자

구자근 • 박충권 • 박준태

안철수 · 김선교 · 김종양

박대출 · 김민전 · 최보윤

김위상 · 김 건 · 서명옥

안상훈 • 김소희 • 김장겸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할 수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 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사업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기술성 평가제도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는 제도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기술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기술성 평가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기술성 평가)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
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 로 선정할 수 있다. 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의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2 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